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07

2026. 6.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나.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 (안 별표 1).

다.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금액의 범위를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3).

라.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시립체육시설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것임.

나. 개정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시립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는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근거 및 기준이 되므로, 신규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개관 전 동 조례에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를 반영하여 다른 시립체육시설과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9월 개관하여 운영될 어울림센터의 현황을 적기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운영의 위탁(안 제16조제2항제12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 략) 1. ~ 11. (생 략) <신 설> ③ ~ ⑨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체육시설 운영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시립체육시설에 어울림센터를 추가하는 것임.

○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체육공간이자 복지, 전문·생활 체육, 편의시설, 주차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시설 운영 사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안 별표 2, 별표 3)

○ 시립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2]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울림센터의 각종 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할 사용료를 이용 시설, 횟수, 시간별로 구분하여 이용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어울림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 수강료는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5%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어울림센터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 수강료 현황 >

(단위 : 원)

구분		월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구)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구)	서울숲 (성동구)	어울림센터 (하한 금액) (노원구)
수영	성인(월수금)	52,000	48,400	49,500	49,500	57,000
	성인(화목)	35,000	32,300	33,000	34,500	38,000
	어린이(월수금)	26,000	30,000	30,000	26,500	36,000
	어린이(화목)	17,600	20,000	19,900	17,500	24,000

1)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2)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 주민의 체육 복지 향상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우선시한 수강료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어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

○ 법제처가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바, 조례안 입안 시 본문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수영장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적용 시, 시설의 명칭에 근거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설의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요금을 정하지 않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출 기준 및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 주요내용

○ 시립체육시설의 대상에 따라 감면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제2호라목).

○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산출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2호아목).

Ⅶ.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7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707

제안년월일 : 2026년 6월 16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수영장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적용 시, 시설의 명칭에 근거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설의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요금을 정하지 않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출 기준 및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립체육시설의 대상에 따라 감면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호라목).

○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산출 근거 마련(안 별표2제2호아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안 별표 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고 시장의 승인를 받아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운영” 이라 ----------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운영” 이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하는 자----------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하는 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한 사용 제한) ① ----------.	위한 사용 제한) ① ----------.
1.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 잔디 보호----------	1. 잔디 보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생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	② ---------- 사용허가시----------.	② ---------- 사용허가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 ---------- ---------- 사용허가 시---------- ---------- -.	③ ---------- ---------- ---------- ---------- ---------- ---------- ---------- 사용허가 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2. ---------- ---------- ---------. ------ ---------- ---------- ----------	2. ---------- ---------- ---------. ------ ---------- ---------- ----------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라.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마. ---------- ---------- ---------- -------- 범위 ---------- ------.	마. ---------- ---------- ---------- -------- 범위 ---------- ------.
바. 삭 제	바. 삭 제	바. 삭 제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②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3. 강동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illegible]
부대시설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illegible]

14. 신월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illegible]	성인	36,000~72,000	[illegible]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13. 강동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illegible]
부대시설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illegible]

14. 신월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illegible]	성인	36,000~72,000	[illegible]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인	19,000 ~38,000	38,000 ~52,000	57,000 ~80,000	76,000 ~108,000	85,000 ~119,000	90,000 ~126,000
	청소년	13,000 ~17,000	26,000 ~34,000	39,000 ~52,000	57,000 ~68,000	55,000 ~77,000	60,000 ~84,000
	어린이	12,000 ~16,000	24,000 ~32,000	36,000 ~48,000	40,000 ~54,000	54,000 ~72,000	58,000 ~78,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인	19,000 ~38,000	38,000 ~52,000	57,000 ~80,000	76,000 ~108,000	85,000 ~119,000	90,000 ~126,000
	청소년	13,000 ~17,000	26,000 ~34,000	39,000 ~52,000	57,000 ~68,000	55,000 ~77,000	60,000 ~84,000
	어린이	12,000 ~16,000	24,000 ~32,000	36,000 ~48,000	40,000 ~54,000	54,000 ~72,000	58,000 ~78,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이라”를 ““운영”이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 중 “잔디보호”를 “잔디 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허가시”를 각각 “사용허가 시”로 한다.

제10조제2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제10조제2호마목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 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 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 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 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 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8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수영장	수영	
	다목적실	생활체육	
	볼링장	볼링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2">시 설</th><th colspan="2">금 액</th></tr>
<tr><td>체육관 및
보조체육관</td><td>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td><td colspan="2">4,000~8,000</td></tr>
<tr><td>야구장</td><td>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td><td colspan="2">4,000~8,000</td></tr>
<tr><td>축구장</td><td>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td><td colspan="2">4,000~8,000</td></tr>
<tr><td>풋살구장</td><td>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td><td colspan="2">4,000~8,000</td></tr>
<tr><td>육상장(트랙)</td><td>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td><td colspan="2">1,000~2,000</td></tr>
<tr><td>체력단련장</td><td>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장</td><td colspan="2">4,000~8,000</td></tr>
<tr><td rowspan="4">실내골프연습장</td><td rowspan="2">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td><td>성 인</td><td>4,000~8,000</td></tr>
<tr><td>청소년</td><td>3,000~6,000</td></tr>
<tr><td rowspan="2">스크린 골프연습장</td><td>9홀</td><td>7,000~14,000</td></tr>
<tr><td>18홀</td><td>14,000~28,000</td></tr>
<tr><td rowspan="3">체육공원</td><td rowspan="3">파크골프장</td><td>성인</td><td>4,000~8,000</td></tr>
<tr><td>청소년</td><td>3,000~6,000</td></tr>
<tr><td>어린이</td><td>2,000~4,000</td></tr>
<tr><td>체조관</td><td>잠실체조관</td><td colspan="2">3,000~6,000</td></tr>
<tr><td rowspan="6">수영장</td><td rowspan="3">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td><td>성인</td><td>4,000~8,000</td></tr>
<tr><td>청소년</td><td>3,000~6,000</td></tr>
<tr><td>어린이</td><td>2,000~4,000</td></tr>
<tr><td rowspan="3">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td><td>성인</td><td>3,500~7,000(1시간)</td></tr>
<tr><td>청소년</td><td>2,000~4,000(“)</td></tr>
<tr><td>어린이</td><td>1,500~3,000(“)</td></tr>
<tr><td rowspan="3">빙상장</td><td rowspan="3">목동실내빙상장</td><td>성인</td><td>4,000~8,000</td></tr>
<tr><td>청소년</td><td>3,500~7,000</td></tr>
<tr><td>어린이</td><td>3,000~6,000</td></tr>
<tr><td rowspan="3">클라이밍장</td><td rowspan="3">산악문화체험센터</td><td>성 인</td><td>3,000~6,000</td></tr>
<tr><td>청소년</td><td>2,000~4,000</td></tr>
<tr><td>어린이</td><td>1,500~3,000</td></tr>
<tr><td rowspan="3">볼링장</td><td rowspan="3">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볼링장</td><td>성 인</td><td>3,500~7,000(1게임, 1레인)</td></tr>
<tr><td>청소년</td><td rowspan="2">2,500~5,000(“)</td></tr>
<tr><td>어린이</td></tr>
<tr><td>비 고</td><td colspan="3">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td></tr>
</table>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 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 강 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 강 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 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 인	19,000 ~26,000	38,000 ~53,000	57,000 ~80,000	76,000 ~106,000	85,000 ~119,000	92,000 ~129,000
	청소년	13,000 ~17,000	26,000 ~34,000	39,000 ~52,000	52,000 ~69,000	58,000 ~77,000	63,000 ~84,000
	어린이	12,000 ~16,000	24,000 ~32,000	36,000 ~48,000	48,000 ~54,000	54,000 ~72,000	58,000 ~78,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고 시장의 승인를 받아 시행한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 · 문화예술 · 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 : 00-18 : 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 : 00-12 : 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 : 00-18 : 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53,000~198,900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1시간)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21,000~173,000	173,000~181,000	224,900~423,000	
	수영장	09:00-18:00	586,000~635,700	882,000~955,500	1,130,000~1,224,600	
		09:00-12:00	195,000~211,900	294,000~318,500	376,000~408,200	
		12:00-18:00	495,000~536,900	745,000~807,300	979,000~1,060,800	
	다목적실	3시간	12,000~15,600	31,000~40,600	37,000~48,400	
	볼링장	1시간, 2레인	28,000~40,000	30,000~42,0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 · 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운영"이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하는 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 ① ----------.
1.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	1. 잔디 보호----------

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 시---------- ---------- ---------- ----------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 사용허가 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	2. ----------

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마. ---------- ---------- --- 범위---------- -----.
바. 삭 제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22. 7. 1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투기,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투기,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8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0)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투기, 각종 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투기, 각종 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 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 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8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 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 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0)
서울시립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88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수영장	수영	
	다목적실	생활체육	
	볼링장	볼링	

[별표 2] <개정 2022. 7. 11.>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잠원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장충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장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장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신내문화체육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비 고	1. 야간·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재지변이나 악천후,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용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별표 2] <개정 2022. 7. 11.>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잠원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장충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장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장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신내문화체육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비 고	1. 야간·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재지변이나 악천후,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용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장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잠원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장충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장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장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신내문화체육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볼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볼링장	성 인	3,500~7,000(1게임, 1게임)
		청소년	2,000~5,000(")
		어린이	
비 고	1. 야간·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재지변이나 악천후,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용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마. 강습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신 설)

[별표 3]

강습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장충공원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세미나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 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특활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미만이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또한 신월야구공원의 시간대는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한강인라인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특활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접거 대여물의 대그·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구체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부대시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면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특활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링크를 폐하오지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면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마. 강충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인	19,000~38,000	38,000~53,000	57,000~80,000	76,000~106,000	85,000~119,000	92,000~128,000
	청소년	13,000~17,000	26,000~34,000	39,000~52,000	57,000~68,000	55,000~77,000	60,000~84,000
	어린이	12,000~16,000	24,000~32,000	36,000~48,000	40,000~54,000	54,000~72,000	58,000~78,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아.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별표 3]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목동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3시간	62,000~80,600	74,000~96,200		
강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장충공원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세미나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31,000~170,300	173,000~224,900	324,000~421,200	
	수영장 / 06:00~18:00	336,000~436,800	662,000~860,600	1,130,000~1,469,000	
	수영장 / 06: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76,000~488,800	
	수영장 / 12:00~18:00	198,000~257,400	346,000~449,800	675,000~877,500	
	다목적실 / 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볼링장 / 1시간, 2레인	28,000~40,000	30,000~42,0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 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특활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미만이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또한 신월야구공원의 [illegible]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한강인라인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특활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접거 대여물의 대그·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구체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부대시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면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특활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링크를 폐하오지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면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